

## 2015년도 제5차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회의소집통보일자	2015. 12. 23.
위원정수	7명
참석위원	5명

1. 회의일시 : 2015년 12월 29(화) 17:00
2. 회의장소 : 청강문화산업대학교 대회의실
3. 참석위원 : 5명(이민수, 이경학, 송용우, 정유석, 김상동)
4. 불참위원 : 2명(홍나리, 방민지)
5. 회의안건 :

가. 심의안건

제1호 안건: 2015회계연도 학교회계 제2차 추가경정자금예산(안) 심의

제2호 안건: 법인부담금 학교부담액 승인 신청의 건

6. 회의내용

성원보고 : 간사가 위원 정수 7명중 5명이 참석하여 등록금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에 의한 의결 정족수가 되었음을 보고하다.

이민수 위원장: 성원이 충족되었음을 확인하고 개회를 선언하다.

**제1호 안건: 2015회계연도 학교회계 제2차 추가경정자금예산(안) 심의의 건**

이민수 위원장: 심의 안건인 제1호 안건을 상정하며, 예산 주관부서인 이경학 위원에게 설명하여 줄 것을 요청하다.

이경학 위원: 2015회계연도 제2차 추가경정 자금예산 심의(안)에 대하여 설명하다. 먼저 2015회계연도 등록금회계 2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은 제1차 추가경정예산 25,559,981천원에서 411,661천원이 증가된 25,971,642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수입의 주요 증가요인은 등록금수입 391,661천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며, 지출은 관리운영비 316,216천원, 고정자산매입 406,928천원등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보수 745,650천원, 교육외 비용 40,000천원을 감액편성하였다고 설명하다.

이민수 위원장: 등록금회계 제2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에 대한 추가 질의사항을 요청하다.

김상동 위원: 등록금 수입이 제1차 추가경정자금예산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요인에 대하여 설명을 요청하다.

간사 이은표: 2015회계연도 당초 예상한 재학생보다 등록 재학생이 약120명 정도 증가하여 등록금 수입이 증가하였다고 설명하다.

정유석 위원: 학생동아리에 대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2016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하다.

이민수 위원장: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 반영에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하다.

정유석 위원: 보수가 큰 폭으로 예산액이 감소하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다.

간사 이은표: 사학연금 법정부담금 지급액이 등록금회계에서 비등록회계로 변경되었으

며, 퇴직교원 등이 발생하여 예산액이 감소하였다고 설명하다.

이민수 위원장: 등록금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사항이 없음을 확인하고, 비등록금 회계에 대하여 설명하여 줄 것을 요청하다.

이경학 위원: 2015회계연도 비등록금회계 제2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은 제1차 추가경정자금예산 12,439,098천원에서 1,613,311천원이 증가된 14,052,309천으로 편성하였으며, 수입은 국고보조금 수입 934,452천원, 투자유가증권 운영 수익 616,252천원 등이 증가하였고, 지출은 보수 266,252천원, 관리운영비 149,965천원, 연구 학생경비 988,099천원이 증가하였다고 설명하다.

이민수 위원장: 비등록금회계 제2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에 대한 추가 질의사항을 요청하다.

정유석 위원: 연구학생경비가 제1차 추가경정자금 예산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다.

간사 이은표: 국가장학금 2형의 장학금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고 설명하다.

김상동 위원: 보수가 증가한 원인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다.

간사 이은표: 당초 사학연금 법정부담금이 당초 등록금회계에서 집행할 계획하였는데 이를 비등록금 회계에서 집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하다.

이민수 위원장: 추가 질의가 없음을 확인하고 제1호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발의하다.

김상동 위원: 제1호 안건에 동의하다.

정유석 위원: 김상동 위원의 동의에 재청하다.

이민수 위원장: 제1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물어 이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교비회계 제2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안에 대해 전원 찬성하여 원안대로 가결하다.

## 제2호 안건: 법인부담금 학교부담액 승인 신청의 건

이민수 위원장: 심의 안건인 제2호 안건을 상정하며, 간사에게 설명하여 줄 것을 요청하다.

간사 이은표: 법인부담금은 사학연금으로 총 466,252천원이고 이를 학교에서 266,252천원, 학교법인에서 200,000천원을 부담할 것이라고 요청하다. 2015. 10. 11

이민수 위원장: 법인부담금 학교부담액 승인 신청에 대한 추가 질의사항을 요청하다.

김상동 위원: 산출내역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다.

간사 이은표: 법인에서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한도가 200,000천원으로 예상하고 이외의 금액은 비등록금회계에서 지급할 것이라고 설명하다.

이민수 위원장: 추가 질의가 없음을 확인하고 제2호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발의하다.

송용우 위원: 제2호 안건에 동의하다.

김상동 위원: 송용우 위원의 동의에 재청하다.






이민수 위원장: 제2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물어 이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법인부담금

학교부담액 승인 신청안에 대해 전원 찬성하여 원안대로 가결하다.

폐회선언: 이민수 위원장이 다른 의견 없음을 확인하고 이경학 위원의 동의와 정유석  
위원의 재청으로 폐회를 선언하다.

위의 사실을 확인함.

2015년 12월 29일

위원장	이민수	
위원	이경학	
위원	송용우	
위원	정유석	
위원	김상동	

붙임: 2015년도 제5차 등록금 심의위원회 회의자료

정유석 10.11.7